

제339회 임시회
2015. 4. 3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4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22일

-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김장희)

가. 제안이유

-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정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확대 및 강화코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자문단 위원 수 조정 : 70명 이내 → 100명 이내(안 제3조제1항)
- 자문단 위원의 이해충돌방지(안 제5조제4항, 제5항, 제6항)

- 자문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정(안 제6조제1항)
 - 1. 공공혁신분과위원회 2. 복지·여성분과위원회
 - 3. 문화·관광분과위원회 4. 창조경제분과위원회
 - 5. 바이오·환경분과위원회 6. 농·어업분과위원회
 - 7.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
- 자문단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(안 제6조제4항)
- 공청회, 포럼 등을 개최하여 도민들의 의견 청취 신설(안 제8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2조 등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)

가. 배경 및 필요성

- 도정 정책자문단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민·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된 기구로 현재 5개 분과 70명의 자문위원이 활동 중에 있음.

※ 구성현황 : 5개분과 70명 * 1기 '11.3.29.(2년), 2기 '13.5.10.(2년) 구성

계	①공공혁신분과	②복지여성분과	③문화민생환경분과	④산업정책	⑤지역발전
70명	11명	14명	16명	15명	14명

- 본 조례안은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·협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자문단을 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전문인력 확충

및 분야별 세분화로 기능을 확대·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○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

첫째, 자문단 위원 수를 기존 '70명 이내'에서 '100명 이내', '성별 균형을 고려'토록 하였으며(안 제3조제1항),

둘째,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한 5개 분과위원회를 '바이오.환경', '농.어업' 등 2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위원회로 확대 하였으며(안 제6조제1항),

셋째, '소위원회'는 현재 '분과위원회 내'에 전문분야별로 두던 것을 '자문단 내'에 두어 도정 주요 정책, 현안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도록 개정함(안 제6조제41항)

- 도정 각 분야별로 전문적.집중적 자문을 위해 위원 수를 30명 (43%) 추가 구성하고, 특히 경제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'창조경제', '바이오.환경', '농.어업' 분과로 세분화 한 것은 도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, 타 시.도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됨.

- 또한, '분과 내'로 한정되어 있던 소위원회 구성범위도 복합.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정의 특성에 맞춰 '자문단 내'로 확대하여 협업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.

○ '정책자문단' 운영과 관련해서 공정한 '심의'를 위하여 위원의 제

척(안 제5조제4항).기피(안 제5조제5항).회피(안 제5조제6항)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, 이는 자문단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법리적, 내용적 문제는 없음.

- 다만, 정책자문단의 주요기능이 자문.협의에 응하는 성격으로 심의.의결 권한이 없음에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※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

제2조(기능) 도정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자문.협의에 응한다.

- 동 조례안 제8조의2에서는 기능 수행 상 필요시 관계 전문가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,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활동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는데, 기존의 단순한 자문기능에서 벗어나 능동적 자문 활동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됨.
- 그 밖에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응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부 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”를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명하는 사람이 되고”를 “지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개의하고”를 “회의를 시작하고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과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
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
3.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

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문화관광·환경분과위원회”를 “문화·관광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산업정책분과위원회”를 “창조경제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“지역발전분과위원회”를 “바이오·환경분과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농·어업분과위원회

7. 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

제6조제4항 중 “분과위원회내에 전문분야별로”를 “도정 주요 정책, 현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 내에”로 한다.

제7조 제목 “간사 및 서기”를 “간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”을 “간사 1명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문단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서기는”을 “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기관 또는”을 “기관과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의견청취) 기능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,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도정 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자문·협의를 <u>응한다</u>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그 밖에 도지사가 <u>부의하는</u>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 <u>따른다</u>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…………… <u>회의에 부치는</u> ……………</p>
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자문단은 <u>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</u>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<u>지명하는</u>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…………… <u>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성별 균형을 고려하여</u> …………….</p> <p>②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 <u>지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</u> 중에서 <u>호선하며</u>,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, 자문단의 업무를 <u>통할</u>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<u>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<u>총괄</u>…….</p> <p>② 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</p> <p>…………… <u>부위원장</u></p> <p><u>이</u></p> <p>……………</p>
<p>제5조(회의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5조(회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하고</u>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④ ~ ⑥ <신 설></p>	<p>③ <u>회의를 시작하고</u></p> <p>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·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·자문·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</p> <p>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</p> <p>3.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p> <p>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</p>
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</p>	<p>제6조(분과위원회의 설치 등) ①</p>

현행	개정안
<p>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문화관광·환경분과위원회</u></p> <p>4. <u>산업정책분과위원회</u></p> <p>5. <u>지역발전분과위원회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분과위원회내에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</u>를 둘 수 있다.</p>	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문화·관광분과위원회</u></p> <p>4. <u>창조경제분과위원회</u></p> <p>5. <u>바이오·환경분과위원회</u></p> <p>6. <u>농·어업분과위원회</u></p> <p>7. <u>지역균형발전분과위원회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도정 주요 정책, 현안 등의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는 자문단 내에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7조(간사 및 서기) ① <u>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명을 두고 분과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둔다.</u></p> <p>② <u>자문단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서기는 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.</u></p>	<p>제7조(간사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 <u>간사 1명씩</u>.....</p> <p>② <u>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8조(자료 협조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<u>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자료 협조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<u>기관과</u>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<신설></p>	<p>제8조의2(의견청취) <u>기능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,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당)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<u>범위 내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<u>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수당) ① <u>범위에서</u> 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 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의 입안·추진 등에 있어 민·관 협력 강화를 위하여 도정 정책자문단 구성·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비용 등

3. 관련조문

- 제9조(수당)
 -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제8조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정책자문단 운영수당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7개 분과 100명, 전체 및 분과별 워크숍 개최(2회)
- 다. 추 계 결 과 : '15년부터 향후 4년간 총 190,000천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4차년도 (2018년)
세 출	190,000	40,000	50,000	50,000	50,000
도정 정책자문단 운영수당및워크숍비용	190,000	40,000	50,000	50,000	50,000

※ 연간 소요비용 : 50,000천원정도 (운영수당 30,000천원, 워크숍비용 20,000천원)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박은상